

## 도 「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」 2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

「사회적 거리두기」 체계개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
※ 기존 충청남도 공고 제2021-1099호는 본 공고로 대체함

2021. 7. 12.

충청남도지사

### 1 | 처분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 
- (벌칙·과태료·행정처분) 동법 제80조, 제83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

#### [감염병예방법]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,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[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(행정처분의 기준)]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(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등 행정처분 실시)과 같다.

## 2

## 처분 사항

기 간 : 2021년 7월 13일(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대 상 :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

\*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

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조치

\*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(원스트라이크 아웃제) 적용

<행정처분 기준(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)>

*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(①출입자 명단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, ②소독,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)			
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다중이용시설 관리 (수칙 요약표)

○ 도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별첨한 ‘2단계 기본방역수칙’과 아래의 각 시설별 ‘의무화 조치’ 적용

구분	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
모임·행사	
사적 모임	<p>▶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※ 천안시·아산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적용 제외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❶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</li> </ul> </li> <li>❷ 돌잔치 (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, 16명까지 가능)</li> <li>❸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❹ 임종 가능성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</li> <li>❺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(예: 풋살 최대 15명)</li> </ul> </li> </ul> <p>* 2021. 7. 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</p> <p>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</p> <p>✓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(산정 인원에서 제외) 7.1~</p>
기타 행사·모임	<p>▶ (행사·집회) 100인 이상 행사·집회 금지</p> <p>*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(법령 등 근거)</p>

구분	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
<b>1그룹 시설</b> (공통 : 마스크착용, 열체크, 전자명부작성, 환기3회, 소독1회)	
<b>유흥시설</b>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※ 클럽, 나이트 10㎡당 1명</li> <li>▶ 24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(유흥종사자 포함)</li> <li>▶ (감성주점, 헌팅포차 추가조치)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</li> </ul>
<b>콜라텍, 무도장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면적 10㎡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24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</li> <li>▶ 음식 섭취, 소리지르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</li> </ul>
<b>홀덤펍, 홀덤게임장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24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</li> </ul>
<b>2그룹 시설</b> (공통 : 마스크착용, 열체크, 출입명부 작성, 환기3회, 소독1회)	
<b>식당·카페</b> (일반음식, 휴게, 제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50㎡이상 시설)</li> <li>▶ 24시~다음날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/ul>
<b>노래(코인)연습장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24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개별 방마다 이용후 30분 이상 환기(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)</li> </ul>
<b>목욕장업</b> (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수면실 운영금지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및 발한실·탕에서 대화 자제</li> </ul>
<b>실내체육시설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체육도장, GX류는 6㎡당 1명)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</li> </ul>
<b>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</li> <li>▶ 음식 제공·섭취, 공연, 노래부르기 금지</li> </ul>

구분	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
<b>3그룹 시설</b> (공통 : 마스크착용, 열체크, 출입명부 작성, 환기3회, 소독1회)	
학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<math>6m^2</math> 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※ (관악기, 노래학원) 노래부르기,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</li> <li>※ (기술형학원)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 가능</li> </ul>
영화관·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</li> <li>▶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,000명 이내로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(온라인예매자는 제외)</li> <li>▶ 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, 침방을 트는 행위(떼창, 육성응원 등) 금지</li> </ul>
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좌석 한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/ul>
결혼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+ 웨딩홀별 <math>4m^2</math>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/ul>
장례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빈소별 100인 미만 + <math>4m^2</math>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/ul>
이·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면적 <math>8m^2</math>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/ul>
놀이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용인원의 70% 인원 제한 ▶ 출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, 이용 전후 손소독 하기</li> </ul>
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용인원의 50% 인원 제한 ▶ 출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금지,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</li> </ul>
오락실·멀티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면적 <math>8m^2</math> 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※ (멀티방) 개별 방마다 이용후 30분 이상 환기(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)</li> </ul>

구분	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
상점,마트,백화점 (300m <sup>2</sup>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판촉용 시음, 시식,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, 휴게공간 이용, 집행행사 금지</li> <li>▶ 이용자 간 2m(최소1m) 유지, 밀집도 높은 구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로 분산</li> </ul>
카지노 (외국인 카지노 제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용인원의 30% 인원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</li> </ul>
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좌석 한칸띄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)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) *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</li> </ul>
기타시설	
스포츠경기 (관람)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실내)수용인원의 30%, (실외)수용인원의 50%</li> <li>▶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</li> <li>▶ 사전예약제 운영권고,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금지 및 지정 장소 섭취, 함성•응원 금지</li> </ul>
경륜장·경정장· 경마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용인원의 30% 인원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</li> <li>▶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함성•응원 금지</li> </ul>
박물관·미술관· 과학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면적 6m<sup>2</sup>당 1명의 50% 인원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출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▶ 전시공간에서는 음식섭취 금지</li> </ul>
실외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/ul>
숙박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객실 내 정원기준(최대정원) 초과 금지(직계가족 예외)</li> <li>▶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/ul>
파티룸 (공간 대여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면적 8m<sup>2</sup> 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파티 목적의 운영,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/ul>
도서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용인원의 50% 인원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교육행사 운영 시 거리두기 준수, 단체견학 자제</li> </ul>

구분	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
키즈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면적 <math>6m^2</math> 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대기 줄을 서는 경우 최소 1m 간격 바닥에 표시</li> </ul>
돌잔치전문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+ 면적 <math>4m^2</math> 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/ul>
전시회·박람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면적 <math>6m^2</math> 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/ul>
마사지업소 안마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면적 <math>8m^2</math> 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/ul>
국제회의· 학술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▶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▶ 사전등록제 운영</li> </ul>
의료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면회시간 제한 ▶ 정기 선제 검사 실시</li> </ul>
요양병원 요양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▶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실시</li> </ul>
종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용인원의 30% (좌석 두 칸 띄우기) ▶ 음식섭취 금지</li> <li>▶ 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(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)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/ul>
대중교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</li> </ul>
마스크 착용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실내 전체 +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</li> <li>▶ 위반시 과태료 부과(10만원)</li> </ul> <p>※ 1차 예방접종자, 예방접종완료자 포함</p>

### 3

## 기타 사항

1. 처분사유 : 코로나19 유행 양상, 감염병 통제범위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·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
2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4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, 위반으로 발생한 화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## 참고1

##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□ (대상) 1~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

< 대상시설(35종) >

구분	시설명
1그룹(3종)	▲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 ▲ 콜라텍·무도장 ▲ 홀덤펍·홀덤게임장
2그룹(5종)	▲ 식당·카페 ▲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 ▲ 목욕장업 ▲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3그룹(12종)	▲ 학원 등 ▲ 영화관·공연장,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, ▲ 결혼식장, ▲ 장례식장 ▲ 아미용업 ▲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▲ 유원시설, ▲ 오락실·멀티방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▲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▲ PC방
기타시설(13종)	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 ▲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 ▲ 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 ▲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▲ 숙박시설 ▲ 파티룸 ▲ 도서관 ▲ 키즈카페 ▲ 돌잔치전문점 ▲ 전시회·박람회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 종교시설
고위험 사업장	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

○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종(고위험 사업장 외)에 대한 방역수칙은  
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 중 대상시설의 2단계 수칙 적용

※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\*\*는 실외 다중 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
※ 2021.7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종교 활동(정규예배, 미사, 법회, 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\*\*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
\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\*\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- ‘콜센터’, ‘물류센터’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‘기본방역수칙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**의무사항**임

### <준수 의무사항>

▲ 콜센터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</li> <li>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 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</li> <li>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</li> <li>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</li> <li>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</li> <li>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</li> <li>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</li> <li>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 작성)</li> <li>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이용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역수칙 준수</li> <li>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</li> </ul> </li> </ul>
▲ 물류센터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</li> <li>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 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</li> <li>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</li> <li>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</li> <li>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</li> <li>- 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</li> <li>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</li> <li>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</li> <li>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</li> <li>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</li> <li>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이용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역수칙 준수</li> <li>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</li> </ul> </li> </ul>

## 참고2

##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※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\*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
- 단, 집회의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

\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### □ 집합·모임·행사

#### ①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-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9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-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- (인원산정) '9명의 범위'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을 제외

### ※ 적용 예외

####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\* 등이 모이는 경우

##### ■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

\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- 돌잔치(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, 16명까지 가능)
-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#### ②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

\*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(예: 풋살 최대 15명)

## ○ 적용대상(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·운영자)의 준수사항

### < 사적 모임 >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9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</li> <li>② 시설 내 이용객이 9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</li> </ul> </li> <li>▶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9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제외)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,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등</li> </ul> </li> <li>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</li> </ul>

※ 천안시·아산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

###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

## ○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

### <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- ▲ (행사) 결혼식, 장례식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- ▲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
※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별첨 ‘기본방역수칙’의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

-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,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#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-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

\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※ 시험의 경우,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

### ○ 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100인 미만의 행사 및 집회·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·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

#### < 100인 미만 행사 및 집회·시위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, 4주 보관 후 폐기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</ul></li></ul></li>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</li><li>▶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</li></ul></li><li>▶ 100명* 미만으로 인원 제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집회의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</li></ul></li><li>※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)</li></ul></li><li>▶ 마스크 착용</li><li>▶ 100명*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집회의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</li></ul></li></ul>

## ○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경고·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
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②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시군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 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③ 해당 모임·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④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- 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
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### 참고3

###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#### □ (대상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운송수단(국제항공편 제외)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※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

#### ○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

##### 이용자 수칙

- ▶ 마스크 착용
- ▶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국제항공편 제외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 참고4

##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

### □ 적용대상

-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### □ 방역수칙

- 실내\*전체 +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(1차 예방접종자, 예방접종완료자 포함)

\* 실내 :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
- 허가된 마스크(1항)로 착용법(2항)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

**①** (마스크 종류)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립뷰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
**②** (착용법)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

- 단속방법

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
-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'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\*'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
\* 위반행위 적발 →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 이내)

\*\*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-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

## ○ 과태료 부가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
예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</li><li>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</li><li>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</li><li>가정 내, 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</li></ul>
예외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</li><li>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</li><li>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</li><li>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</li><li>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</li><li>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</li><li>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</li><li>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</li><li>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</li><li>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</li></ul>

**참고5****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방안**

구분	1차 접종자	예방접종 완료자
사적모임	-	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
행사	-	행사 제한인원에 미포함 ※ 단 집회·시위의 경우 단계별 인원제한 기준 계속 적용
실내 다중이용 시설	-	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
실외 다중이용 시설	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	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
종교활동	정규 종교활동시 인원 제한에 미포함	정규 종교활동시 인원 제한에 미포함
	-	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, 소모임 운영 가능
요양병원 · 시설	-	1~3단계 면회객, 입원환자 둘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
	-	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

※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